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153

발의연월일: 2022. 6. 27.

발 의 자:유경준・태영호・조수진

김상훈 · 강대식 · 배현진

노용호 • 이채익 • 조명희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으로 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하"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하여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벤처기업등에 대하여는 신성장 산업의 발굴과 선점효과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고, 최근 영화, 음악,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시장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등에 대한 출자와는 달리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

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도 법인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벤처기업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법인세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법인세 공제특례의 대상에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66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2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등"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창업기업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정 혅 행 개 아 법률 제18661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866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 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 1. ------베 처 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 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52조에 따라 등록한 문화 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 서 "창업기업등"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
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
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
하여 <u>창업기업,</u> 신기술사업
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
<u>업전문회사</u> 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 ⑤ (생 략)

2
<u>창업기업등</u>
② ~ ⑤ (현행과 같음)